

2016년도 제4회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

□ 회의 개요

- 일 시: 2016.9.23.(금) 11:00~12:00
- 장 소: 12층 국제회의실
- 참석자: 8명
 - 옴부즈만 : 윤진희(위원장), 최태진(위원), 이상엽(위원), 이흥권(위원), 박세인(위원)
 - 실무자 : 손경미(반부패·청렴팀), 정슬기(반부패·청렴팀), 이하영(감사부)
- 안 건
 -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추진현황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방안 논의
 - 반부패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제도화 진행상황
 - 제3회 청렴옴부즈만 의견 반영 제도화 진행상황

□ 회의 결과

- 안건 1과 관련하여, 현재 추진 중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. 보고서는 미리 대비하여 작성하고 몇 차례의 컨설팅을 통하여, 실적을 잘 구성·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
- 안건 2와 관련하여, 아이디어 수렴에서 끝나지 않고 공모전 결과를 적시에 제도화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임
 - 제8조의 ‘요구에 의해’ 라는 문구는 주체가 빠져있어 모호함으로 요구의 주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
 - 제10조의 ‘공기구 비품, 기계장치, 개별단가가 5만원 초과 물품’이라는 나열식의 표현이 이중해석이 가능함으로, ‘공기구 비품, 기계장치 및 개별단가’와 같은 표현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

- 제10조의 ‘인쇄물, 복사물, 5만원 이하의 물품’이라는 나열식의 표현이 이중해석이 가능함으로, 위의 의견과 같이 ‘인쇄물, 복사물 및 5만원 이하의 물품’과 같은 표현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

○ 안건 3과 관련하여,

- 제6조3항,4항의 내용은 평가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8조(평가 및 선정 기준)의 내용에 포함할 것을 권고
- ‘서류’의 의미가 인쇄물까지 포함되어있다고 판단되나, ‘서류’라는 단어와 ‘인쇄물’이 혼동되어 쓰이므로 정리가 필요함

○ 회의증빙 사진

